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7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윤준병 · 임호선 · 이병진
전용기 · 부승찬 · 송옥주
임미애 · 문대림 · 박용갑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련 허가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 동물의 번식 또는 반입·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함에 있어 동물의 실물이 다른 사진·영상을 통하여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사기 분양·사기 판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며,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 동물판매업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제4호 중 “반입·반출”을 “반입·반출, 유실,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전달할 것”을 “전달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게 한 후에 직접 또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판매 또는 전달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제69조제4항”을 “제69조제4항 · 제6항”으로, “변경허가”를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중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6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갱신허가”로 한다.

제97조제2항제9호 중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제69조제1항 · 제4항 · 제6항”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16호 중 “반입 · 반출”을 “반입 · 반출, 유실, 폐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 ----- -----.

1. ~ 3. (생 략) 4. 동물의 번식, <u>반입 · 반출</u>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 11.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u>전달할 것 <후단 신설></u> ⑤ · ⑥ (생 략)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1. ~ 3. (현행과 같음) 4. -----<u>반입 · 반출, 유실, 폐기</u>-----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전달할 것. 이 경우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게 한 후에 직접 또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판매 또는 전달하여야 한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5. 제69조제4항 · 제6항-----
-----변경 허가
또는 갱신 허가-----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하게 할 수 있다. 1. <u>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u>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생략) ② ~ ⑤ (생략) 제9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u>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u>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u>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u>를 받은 자 11. ~ 14. (생략) ③ ~ ⑥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 1. <u>제6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갱신허가</u>-----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제69조제1항 · 제4항 · 제6항-----허가,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u>----- ----- 10. ----- ----- <u>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u>----- 11. ~ 1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 (생략) 16.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u>반입·반출</u>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17.·18. (생략) ③ ~ ⑤ (생략)	② -----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u>반입·반출</u>, <u>유실, 폐기</u>----- ----- ----- 17.·1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